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0. 16.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 10. 1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2.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5. 4. 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4. 23.)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3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임.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비영리 사단법인, 민간기업 등 총 12개가 운영 중임.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임²⁾.

지원센터의 업무가 “지원” 업무인 점에서 단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업무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대체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업무 미수행 기간에 관한 입법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6개월·12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다양함.

2) 정부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의 ‘실적이 없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던 것을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11)이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임.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업무 미수행 기간

법 률	기 관	업 무	기 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지원센터	-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1개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회적책임 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개월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지원센터	- 산업융합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이용 - 산업융합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자등의 신제품 개발과 융합 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	6개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해외창업지원기관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1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4.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개정안은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이었는데,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5조의4제3호 중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 ----- ----- ----- ----. ----- ----- ----- -----.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 ----- <u>6개월 이상</u> ----- -----	3. ----- ----- <u>3개월 이상</u>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4제3호 중 “1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1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u>1개월 이상</u>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3개월 이상</u> ----- -----